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 - 15055호

시행일자 2024. 2. 2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(e-라벨) 대상 의약품」 공고  
알림에 따른 안내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2211(2024.2.23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약사법」 제58조제2항 개정(시행일: '24.1.2.)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(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(e-라벨) 대상 의약품)을 붙임과 같이 확대·공고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에 안내드립니다.

\* 동 공고문은 식약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> 알림 > 공지/공고 > 공고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붙임 : 식약처 공문 및 「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(e-라벨) 대상 의약품」 공고문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